

#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제정안

## 심사 보고

1991. 10. 9

산업위원회

### 1. 심사결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9월 16일

○ 회부일자 : 1991년 9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71회 임시회

○ 제3차 산업위원회(1991. 10.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국장 김동기)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시책과 주요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시·군간, 시·군과 도와의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시·도 경제협의회에

전의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의 협의, 조정이 필  
요한 경제관련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조례 제2조)

- 협의회의 구성은 30인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의 경제 관련실국장, 부시장, 부군수중 약간명, 경제 관련 주요지방관서, 학계,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로함.(조례 제3조)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함.(조례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허 회)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설치에 대하여는 당초 84. 6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1991. 7. 20 시도 경제협의회 설치규정 대통령령(제13430호)이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 제9조에 의거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시도조례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 설치조례 제정안은 내용중 별첨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 5. 토론요지

유영훈위원 : 제3조 제1항 협의회위원을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음.

동조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여있음으로 본조항에 지역의 대표성 인자 즉, 지방의회의원(도·시도의원)을 대상자로 명시, 삽입하자는 의사가 있었음.

○ 우범성위원 : 경제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며 경제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조건에 지방의회의원을 구성요건에 명시하여 삽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대의사 표명

○ 전기 우범성위원의 발언에 유명희위원, 정진철위원, 정광주위원 동조표명

○ 김진학위원 : 그러면 협의회구성위원 30명을 50명으로 20명을 증원하여 도지사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때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 제시

○ 위원장 안철호 : 10분간 정회선포

### — (정회후) —

○ 유명희위원 : 유영훈위원에게 지역경제협의회 위원구성요건중 지방의회의원 명시 삽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해 설득 중

○ 유영훈위원 : 불참선언후 퇴장

○ 안철호위원장 : 속계 선언후 김진학의원 의견에 대하여 거수방

법으로 표결 결과 찬성거수위원 김진학위원, 안재원위원, 정광수 위원 3명으로 참석위원 7명(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김진학, 정 광수, 정진철, 위원장)중 위원장을 제외한 3대 3, 동수가 나와 위원장은 당초 제안상의 30명을 부결로 보아 부결에 합산 50명 으로 증원됨을 의결선언후 선포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 수정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수정)제정안

나.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제정안

다. 수정문안 대비표

##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 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시·군간,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
  2. 부시장, 부군수 중 약간명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 ④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협의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 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도의 관련 실국 및 시·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 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책에 관한 사항
2.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시·군간,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  
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제협의회  
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  
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
  2. 부시장, 부군수 중 약간명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 ④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협의회를 대표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 과장이 된다.

-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도의 관련 실국 및 시·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제 출 (안)	수 정 (안)
○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3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5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과 반수의 <u>출석과</u>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과 반수의 <u>출석으로 개의하고,</u> <u>출석의원</u>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u>통보받는</u> 기관은	○ 제7조(의안의 제출)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u>통보받은</u> 기관은
○ 동조 제3항 위원장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 동조 제3항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